

대학특성화 추진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17. 05. 01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의 특성화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획 및 추진을 하기 위한 대학특성화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 위원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한다.

1. 특성화 관련 정보수집, 연구, 특성화계획 수립
2. 대학특성화 사업의 총괄 기획, 평가 및 환류
3. 대학특성화분과위원회 구성
4. 특성화 추진사항의 점검과 성과분석
5. 정책유도 분야 연구 및 계획 수립
6.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
7. 기타 대학 특성화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

제 3 조 (구성) ① 위원장은 총장이며,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부위원장은 부총장이며, 총괄위원은 연구처장이 한다.

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, 기획실장, 창업지원단장, 교무입학처장, 취업정보처장, 경영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이 외의 위원은 총장이 필요에 의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기획조사업무를 위해 working group을 한시적으로 구성·운영 할 수 있다.

제 4 조 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교직원 또는 관련인사를 회의에 배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 6 조 (서면결의)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위원회) ① 사업단 및 본부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으로 인한 산출물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대학특성화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대학특성화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학부 단과대학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제 8 조 (회의록 작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이 총장이므로 회의록 보고는 회의록 날인으로 갈음한다.
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.

제 9 조 (기타)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